知的所有權紛爭事例

曲名『술은 눈물이냐 한숨이냐』事件

<1934年 4月 14日 日本 東京地法 判決>

1. 原　告 : 레코드 古賀政男
2. 被　告 : 오젠레코드合資會社
合資會社 帝國發明社

3. 事件槪要

日帝治下 韓國에서 한때 流行되던 音盤中에는 『술은 눈물이냐 한숨이냐』(酒は涙か溜息か)의 日語版이 있는가 하면 『꿈은 눈물이냐 追憶이냐』(夢は 涙か 思い 出か)의 韓國語版이 出版되었다. 이 音盤의 노래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말썽의 素地가 적지 않은 作品이었다.

이 音盤을 에워싸고 日人끼리 紛爭이 벌어졌다. 그 줄거리인 즉 『酒は 涙か 溜息か의 音盤은 古賀政男 作曲, 高橋掬太郎 作詞, 藤山一郎 歌唱으로 原告인 콜롬비아레코드會社가 出版하여 1931年 9月 부터 32年 2月末 사이에 80萬장이 販賣되었다는 原告의 主張이다.

한편 被告인 오젠레코드合資會社는 1932年 1月부터 콜롬비아出版曲을 無斷利用, 改纂, 異曲의 歌詞를 부쳐서 『꿈은 눈물이냐 追憶이냐』라는 主題下에 訴外 中野忠晴으로 하여금 노래를 吹入하여 音盤을 製造販賣하였다.

또한 被告인 合資會社 帝國發明社는 오젠레코드社의 樂譜에 『꿈은 눈물이냐 追憶이냐』의 韓國語歌詞를 부쳐 訴外 蔡奎燁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여 音盤에 吹入한 후 1932年 2月 8日부터 祖國에서 販賣하였다.

이에 대해 原告인 古賀政男이 오젠레코드社와 帝國發明社를 相對로 提訴하였다. 이같은 提訴에 따라 레코드에 대한 그 曲이 著作權侵害냐의 與否에 대한 鑑定을 中山晋平에게 委囑하였다.

中山晋平은 音符의 約 3分의 1이 完全 同一하며 故意의 僞作인 著作侵害라고 斷定하였다.

또 그는 原告인 古賀政男과 같은 大會社의 專屬作曲家가 作曲한 流行歌는 最低 150円에서 1萬円 程度가 通念的 報酬이며 이 事件과 같이 數十萬장이 팔린 樂曲으로서 다른 레코드會社에 그 製造販賣를 許容한다면 1千円이 妥當한 報酬額이 된다. 또한 이 事件과 같이 原作을 改纂하고 藝術的으로 卑俗하게 吹入演奏한 경우 僞作者는 原作者에 대하여 500円에서 1,000円程度의 慰藉料를 支拂해야 한다고 鑑定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古賀政男는 被告의 行爲는 著作權侵害이며 가령 原告의 作曲利用을 許諾한다고 하면 使用料金은 250圓이 된다. 따라서 이 金額이 損害額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兩被告의 音盤은 吹入者가 未熟할 뿐 아니라 俗惡卑猥하여 原告의 藝術的良心을 損傷시키고 名譽도 毁損하였다. 이에 대한 慰藉料로서 100圓을 支拂해야 하며 各音盤의 製造, 販賣, 頒布도 모두 停止하라는 要求였다.

4. 判決要旨

東京地法 第8民事部는 1934年 4月 14日字로 被告인 오젠레코드合資會社는 『꿈은 눈물이냐 追憶이냐』의 音盤製造, 販賣, 頒布 및 同樂譜의 曲에 의한 韓國語吹入音盤의 製造를 하지 말 것.

또 被告인 帝國發明社는 前記 韓國語吹入音盤의 販賣, 頒布를 하지 말것.

그리고 被告들은 各自原告에게 金 250圓을 支拂하라고 判示하였다.

5. 解　說

同事件의 判示에서 原告가 請求한 慰藉料는 認定하지 않았으며 특히 그 訴訟當時가 軍國主義終半期였다는 점에서 事件 自體의 結末보다는 感懷가 새로운 것이다.